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UH(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UH(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UH(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2년 3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년 4월 16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276-4700, www.ki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UH (주식)	16967
A	16968
C	16970
C2	16971
C3	16972
C4	16973
C-e	16974
C-F	16975
C-I1	16976
C-I2	16978
C-W	16979

2. 모집예정기간 : 모집(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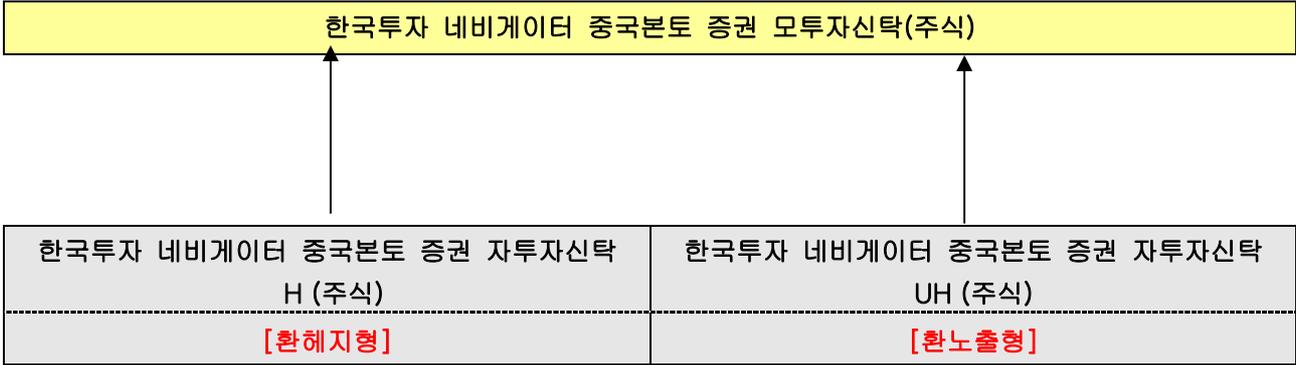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명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당해 투자신탁의 구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투자 네비게이 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다만, 중국 A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
	투자목적 - 외국 주식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국 A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 니다.
	비교지수 (CSI 300 Index X 100%) (원화환산수익률)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중국 A 주식에 주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전국적 판매망,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 보유 성장 업 종대표주에 투자 ▪ 글로벌화, 산업구조조정과 M&A 테마주 발굴 ▪ 비유통주 개혁 수혜주, 지배구조 개선 테마주 발굴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 범위내에서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A 주식 ETF 에 투자 - 중국 A 주식시장에 기업공모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IPO)에 투 자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어음 및 외국 채권 등에 추가적 으로 투자 - 환헤지전략은 수행하지 아니함.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음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자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투자 네비게이	주요투자대상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 투자

더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H (주식) [증권신고서 제출 일 : 2009..]	투자목적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A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교지수	(CSI300 Index X 90%) + (Call X 1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 유동성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투자 - 환헤지전략을 기본적으로 수행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m.co.kr)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 신탁계약서 제3조 제4항의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유동성자산	10%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상기 투자대상은 투자대상 중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외국주식	70%이상 (다만, 중국 A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3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3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3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등	3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p>-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및채권 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장외 파생상품	주식및채권 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장외 파생상품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함)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p>※ 비교지수 : (CSI300 Index X 95%) (원화환산수익률) + (Call X 5%)</p> <p>☞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p>■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국 A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 이 투자신탁은 중국 A주식 및 A주식 ETF 등에 투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어음 및 외국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환위험 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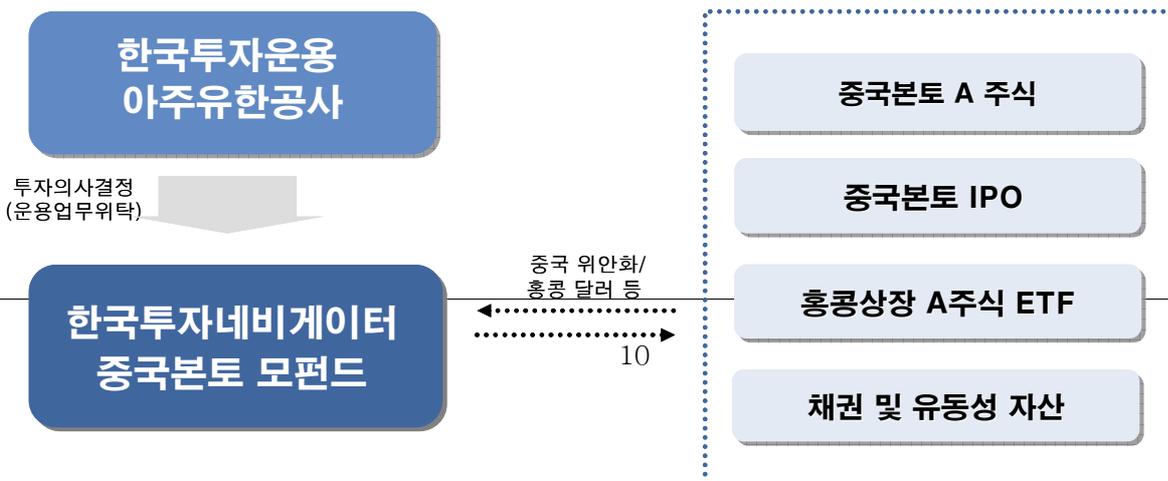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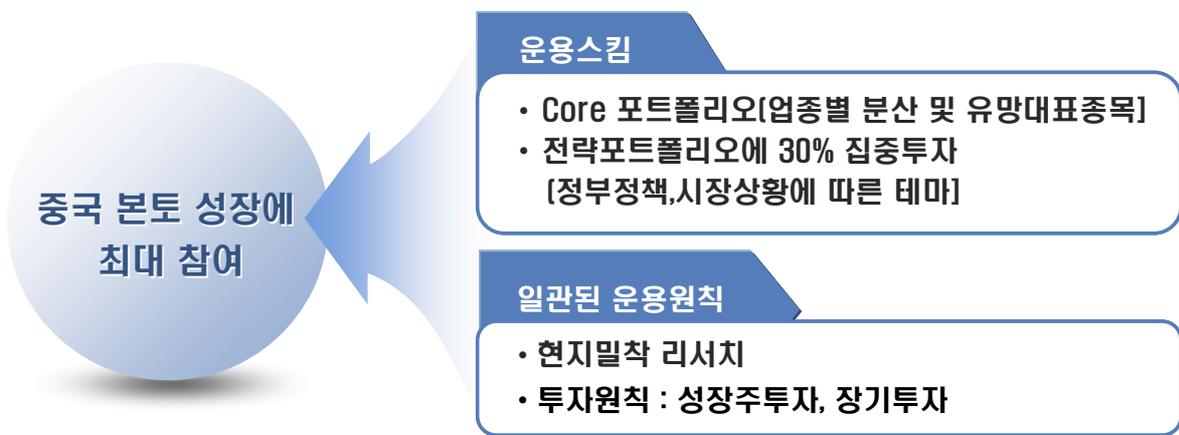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1) 이 투자신탁은 중국 A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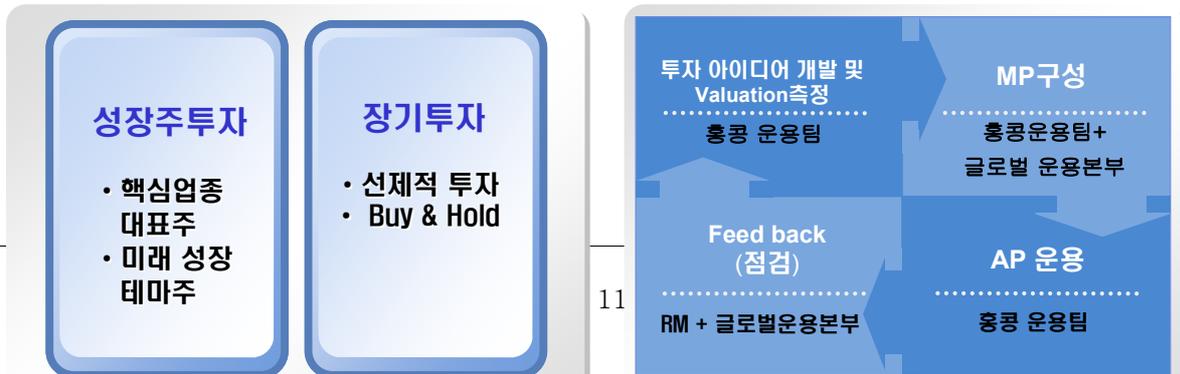
▶ A주식이란?

중국 증권거래소의 A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하며 상해 증권거래소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각각 A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중국 내국인 및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만이 투자가 가능하지만 향후 중국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란?

중국 본토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적격 기관 투자자를 말하며 CSRC(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얻게 되면 SAFE(중국외환관리국)으로부터 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한도(Quota)를 받게 되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는 이 투자한도(Quota) 내에서 중국 주식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09.7.21 CSRC(중국 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 투자 프로세스



(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 범위내에서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A주식 ETF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3) 이 투자신탁은 중국 A주식 및 A주식 ETF 등에 투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어음 및 외국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4) 환위험 관리전략 : 환위험 노출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 관리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SI300 Index X 100%) (원화환산수익률)

■ 비교지수 지정 사유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중국 A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중국의 전문지수산출기관인 중증지수유한공사(China Securities Index Co., Ltd)에서 발표하는 대표지수인 CSI300 Index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 “CSI300 Index” 주요 내용

- CSI300 Index는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의 상장 종목 중 대표적인 3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로서 주요 상위 편입종목은 중국은행, 민생은행, 평안보험 등입니다.
- 조회방법
www.csindex.com.cn/sseportal_en/csiportal/indexquery.do 접속
⇒ 오른쪽 Index Performance 에서 조회 가능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외국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자산의 환율에 대한 환헛지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 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 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집합투자재산을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국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중국 A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중국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세제상위험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A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이익에 대하여 소급 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금액은 이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준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소급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환매신청에 따른 환매대금은 한국으로 송금하는 날까지 중국에 외국통화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달러 및 홍콩달러 등을 활용한 환헷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적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환헤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환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헤지가 되지 않거나 환율변동 및 환매 규모 등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투자신탁에 잔존하는 수익자의 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	중국 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요 송금규제정책은 <u>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투자한도(Quota)를 받은 시점]로부터 6개월까지 투자한도(Quota) 전액을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개월 간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 해외송금을 월1회로 제한하고 있</u>

	<p>어 환매를 요청한 수익자가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하기까지 일반적으로 40여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환매청구의 발생으로 인하여 5천만 미달러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므로 차기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며, 차기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후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지급이 순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 수령기간은 일반적인 환매대금 수령기간인 40여일 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로의 송금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연기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p>
<p>최소투자규모 제한으로 인한 위험</p>	<p>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로서 중국 A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u>최초 투자자금 규모가 2천만 미달러이상이어야 합니다.</u> 따라서 <u>최초 모집금액이 2천만 미달러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중국 A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최종 모집금액이 2천만 미달러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u></p>
<p>중국시장 고유의 위험</p>	<p>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의 증권시장과 비교할 때 증권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QFII의 자격 취소 또는 투자제한에 따른 위험</p>	<p>집합투자업자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로서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기간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제한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중국 A주식 시장에 투자가 곤란하거나 심지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 A주식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투자목적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유동성 위험</p>	<p>중국본토주식 등의 유가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발행회사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중국A주식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서 투자하는 CAAPs, AXP 등의 파생상품은 중국A주식 또는 A주식 관련 인덱스 펀드의 운용 전략을 복제하도록 고안됩니다. 그러므로 CAAPs, AXP 등의 파생상품 발행회사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거래중지, 청산 등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중국A주식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은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CAAPs, AXP 등의 파생상품은 특정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만기시 발행회사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중국A주식 관련 주가지수를 추종</p>

	<p>할 적절한 상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은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p> <p>CAAPs, AXP 등의 파생상품 발행회사가 파생상품 발행 이후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파생상품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이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어 파생상품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임의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시장거래 가격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중국A주식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은 중국A주식 및 주식관련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순자산가치의 변화보다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추적오차 발생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의 부분 복제 등에 따른 지수 추적 괴리 발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거래소 개장시간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거래소 개장시간 불일치 및 시장 수급 요인 등으로 인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 발생,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상장폐지 위험	<p>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소는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의 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의 설정 또는 해지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 거래종목에 대해서 상장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유지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국가위험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투자대상국가(중국, 홍콩)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p>

	<p>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신흥시장 국가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A주식(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함)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신흥시장 국가에 해당하므 로, 이 집합투자기구에 신흥시장 국가위험이 뒤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 정치·경제적 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은 법률, 회계제도, 정부규제 등의 급작스런 변경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자산가치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역사가 짧은 국가의 경우 재정·금융정책 운영 미숙 등으로 해당국 금융시장 전체가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법률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각종 사법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해 조세제도를 포함한 법률제도 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제도를 통한 상환 청구 사유발생시 소요되는 시 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연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 회계위험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회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다를 수 있어 각종 재무제표 수치의 신 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시 정보의 범위가 국내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재무정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 시 그 결과의 신뢰성이 선 진국가에 비해 낮을 수도 있습니다.</p> <p>■ 유동성 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불리한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포트폴리오 조정의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결제위험 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증권 등의 거래 시 결제 절차의 미발달로 인해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의 매매가격 신뢰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송금에 필요한 정부 승인이 지연 또는 거절로 환매연기가 돼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p>

	<p>■ 거래소시스템 위험</p> <p>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증권 거래소의 운영미숙과 시스템 낙후로 인해 매매정지 등이 선진국가에 비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정지 등의 사건은 주식 등의 평가를 원활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유동성위험을 증대시켜 환매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 환율 급변동 위험</p> <p>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통화 가치가 선진국 통화에 비해 크게 변동하여 투자자산의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환전위험</p> <p>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요인 및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수축 등으로 통화의 환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시장으로의 자금의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전지연 등으로 인한 환매연기로 기회비용 발생이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 조세위험</p> <p>일부 신흥시장 국가의 경우 선진국가에 비해 조세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산이 처분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증권대여 위험</p>	<p>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증권차입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공모주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p>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금리스왑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기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왑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스왑 포지션이 swap pay position일 경우: 금리 하락시, swap receive position일 경우: 금리 상승시)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환율제도에 따른 위험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되고,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등의 환율에 연동되어 그 가치가 변동됩니다.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해당국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원/달러 선물 등)을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위험 헤지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외환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연동통화 대비 평가절하 시키는 경우 등의 이유로 환헤지의 유효성은 약화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p>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 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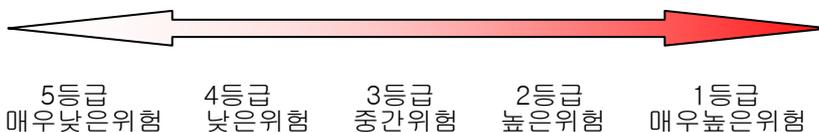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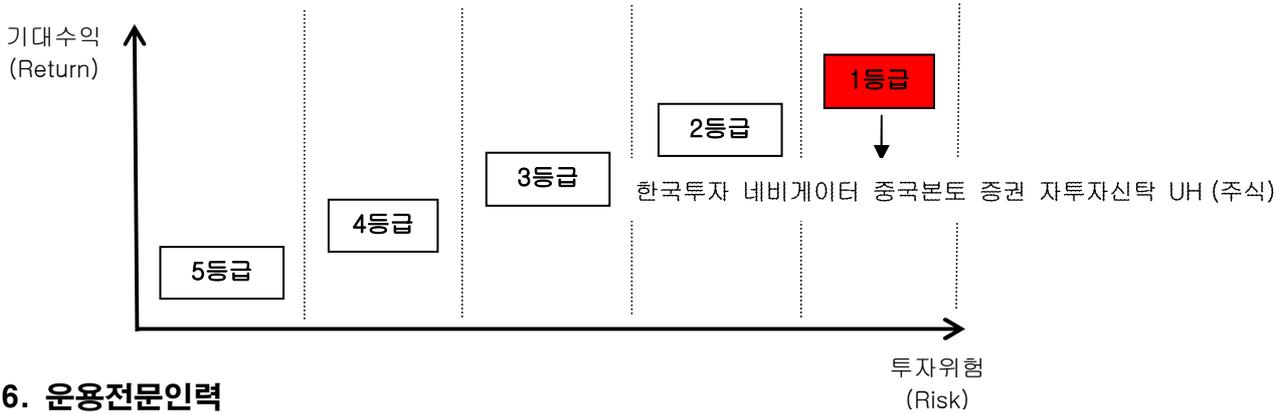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외국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에 연동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5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및 외국 주식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04.09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조성만	1972	팀장	0개	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경제학과 - 2005.12~2008.04: 한화투자신탁운용 전략운용팀 - 2008.05~2012.3: 동양자산운용 글로벌자산운용팀 - 2012.3 ~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시 운용본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책임운용전문인력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조성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04.09일 기준]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조성만	1972	팀장	0개	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경제학과 - 2005.12~2008.04: 한화투자신탁운용 전략운용팀 - 2008.05~2012.3: 동양자산운용

					글로벌자산운용팀 - 2012.3 ~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SI 운용본부
--	--	--	--	--	--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10.03.31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규모	
HO- WA LEUNG	1963	CIO (대표운 용전문 인력)	16개	3,1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Hong Kong - 1985.07~1987.06 : Nomura Research International Hong Kong - 1988.06~1989.05 : First Pacific Securities Hong Kong - 1989.06~1991.06 : Shearson Lehman Hutton Securities Hong Kong - 1991.07~1994.05 : DAM Hong Kong - 1994.05~1996.06 : Credit Suisse Hong Kong - 1996.06~2003.11 : UBS Hong Kong - 2003.11~2010.03 : Citigroup - 2010.03~현재 : 한국투자운용아주유한 공사 CIO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으로서 위탁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10.03.31 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 규모	
HO- WA LEUNG	1963	CIO (대표운 용전문 인력)	16개	3,1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Hong Kong - 1985.07~1987.06 : Nomura Research International Hong Kong - 1988.06~1989.05 : First Pacific Securities Hong Kong - 1989.06~1991.06 : Shearson Lehman Hutton Securities Hong Kong - 1991.07~1994.05 : DAM Hong Kong

					- 1994.05~1996.06 : Credit Suisse Hong Kong - 1996.06~2003.11 : UBS Hong Kong - 2003.11~2010.03 : Citigroup - 2010.03~현재 : 한국투자운용아주유한공사 CIO
--	--	--	--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으로서 위탁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4.01 ~12.03.31	10.04.01 ~12.03.31			10.02.05 ~12.03.31
투자신탁(모)	-23.19	-10.00			-9.68
비교지수	-17.16	-10.03			-8.47
투자신탁 (종류A)	-24.64	-11.64			-11.33
비교지수	-17.16	-10.03			-8.47
투자신탁 (종류C-e)	-24.71	-11.68			-11.37
비교지수	-17.16	-10.03			-8.47

(주 1) 비교지수 : [(CSI300 Index X 95%) (원화환산수익률) + (Call X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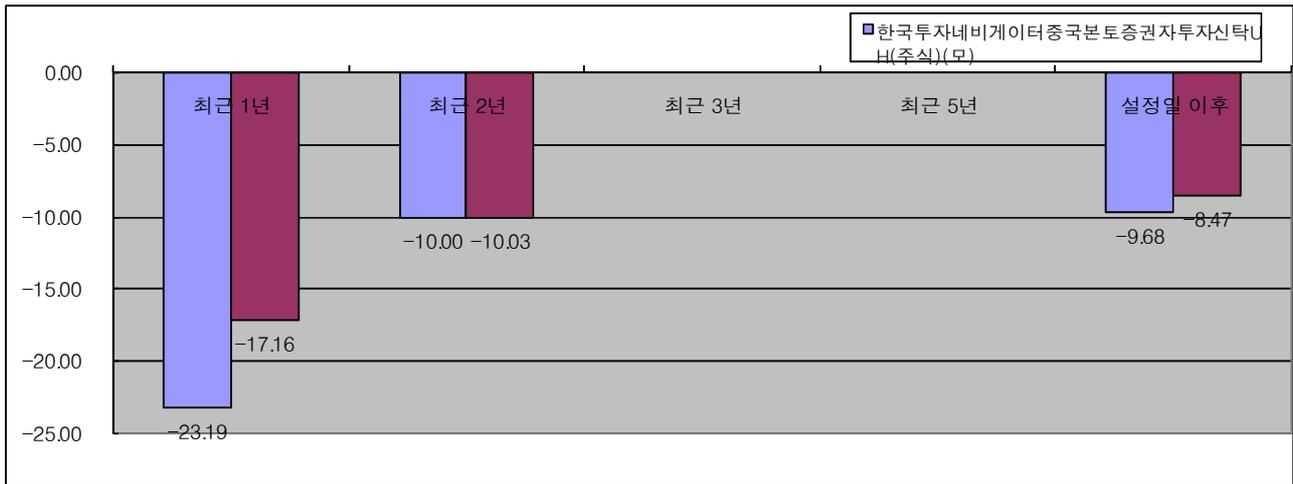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4.01 ~12.03.31	10.04.01 ~11.03.31	-	-	-
투자신탁(모)	-23.19	5.45			
비교지수	-17.16	-2.30			
투자신탁 (종류A)	-24.64	3.60			
비교지수	-17.16	-2.30			
투자신탁 (종류C-e)	-24.71	3.60			
비교지수	-17.16	-2.30			

(주 1) 비교지수 : [(CSI300 Index X 95%) (원화환산수익률) + (Call X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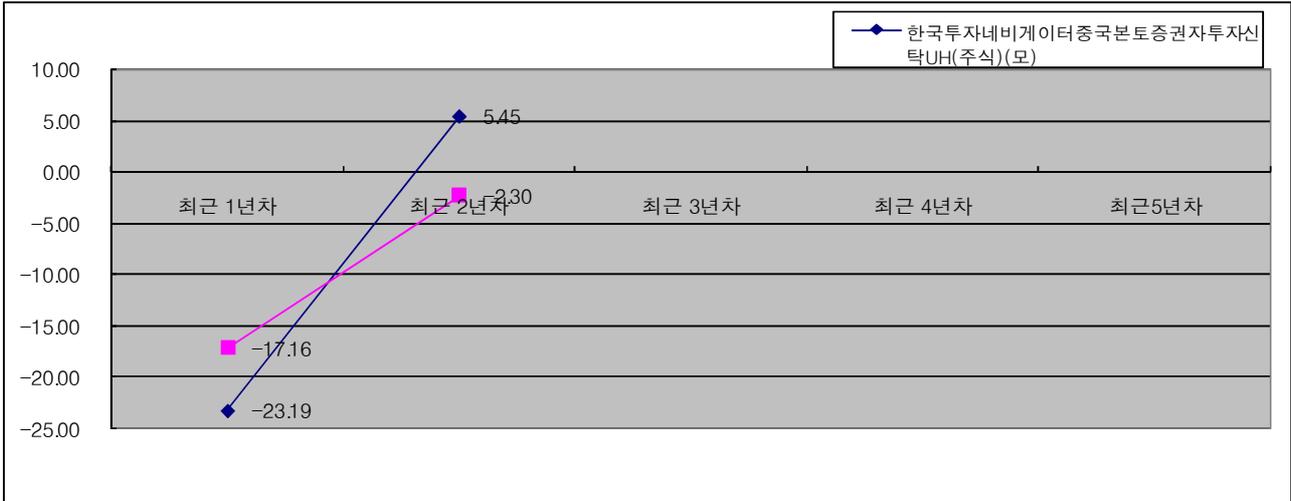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 상기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1	종류 C-I2	종류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이상 180일미 만: 이익금의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	-----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25조의3(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UH (주식)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 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1	종류 C-I2	종류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90일이상 180일미만: 이익금의 30%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25조의3(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별	가입자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종류A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2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26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8506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9049	
		증권 거래비용	0.4520	사유 발생시
종류C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429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2.5141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종류C2	종류C 수익증 권의 보유기 간이 1년 이 상인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5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279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2.3641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종류C3	종류C2 수익 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9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19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2.0041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종류C4	종류C3 수익 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829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9141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종류C-e	온라인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23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303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9849	
		증권 거래비용	0.4736	사유 발생시
종류C-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100 억원이상 매 입한 개인 /500억원 이 상 매입한 법 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960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0769	
		증권 거래비용	0.5551	사유 발생시
종류C-11	최초 납입금 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4295	
		합성 총보수·비용	1.5141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종류C-12	최초 납입금 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25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179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2641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종류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 자산관리계좌 보유자/신탁 업자/특별계 정의 신탁업 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8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기타비용	0.001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9295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0141	
				증권 거래비용	0.3911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1.02.05 ~ 2012.02.04]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1.02.05 ~ 2012.02.04]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	
신탁업자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 비용	0.0557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557	
증권 거래비용	0.4685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1.02.05 ~ 2012.02.04]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11.02.05 ~ 2012.02.04]
-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현황

■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중국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H (주식)

[단위:연간,%]

구 분 다른 자투자신탁	집합 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합 계
종류 A	0.8500	0.9200	0.0600	0.0180	1.848
종류 C	0.8500	1.5000	0.0600	0.0180	2.428
종류 C2	0.8500	1.3500	0.0600	0.0180	2.278

종류 C3	0.8500	0.9900	0.0600	0.0180	1.918
종류 C4	0.8500	0.9000	0.0600	0.0180	1.828
종류 C-e	0.8500	1.0000	0.0600	0.0180	1.928
종류 C-F	0.8500	0.0300	0.0600	0.0180	0.958
종류 C-I1	0.8500	0.5000	0.0600	0.0180	1.428
종류 C-I2	0.8500	0.2500	0.0600	0.0180	1.178
종류 C-W	0.8500	0.0000	0.0600	0.0180	0.928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6	703	1,134	2,332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8	722	1,153	2,35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7	640	1,098	2,366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344	597	1,319
종류 C-I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5	482	831	1,816
종류 C-I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0	403	698	1,534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324	563	1,246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총보수·비용을 산출합니다.

(주 2) [종류 A와 종류 C]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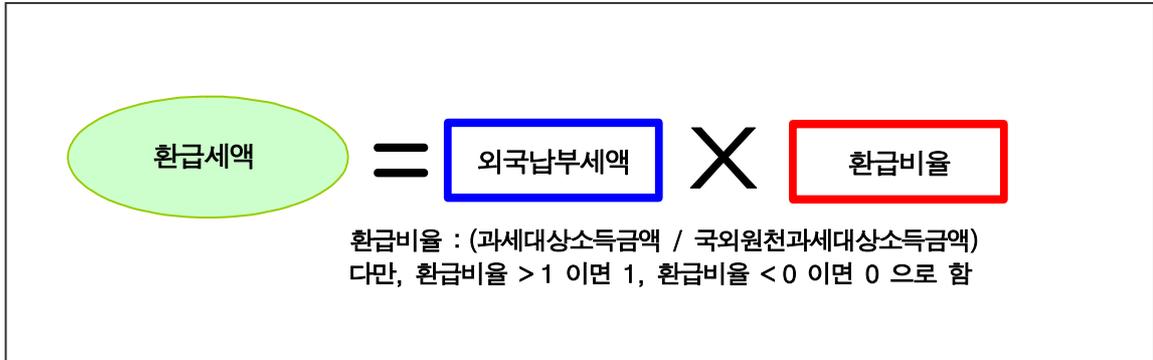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

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중국에서의 과세

중국 내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로서 투자한도(Quota)를 부여받아 투자하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중국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ai shui [2005] No.155에 의하면 QFII는 중국 내 위탁증권사를 통한 유가증권 거래 매매차익에 대한 영업세(Business Tax)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Provisional Regulations on Stamp Duty[중국 국무원 1988.8.6 공포, 1988.10.1 효력발생]에 의하면 QFII는 중국 A주식 및 B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1%가 증권거래세(Stamp Duty)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Enterprise Income Tax Law[SAT(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가 발표한 Circular No.47]에 의하면 중국 거주 기업이 QFII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과 금융기관이 QFII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nterprise Income Tax Law 및 財稅 [2008] 1호에 의하면 중국 국채 및 투자신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각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Enterprise Income Tax Law를 감안하여 볼 때 QFII는 중국 내 상장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서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조세정책 변경 등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에 대해 영업세(Business Tax) 및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 등이 과세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Stamp Duty) 등의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과세당국이 소급과세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투자자들은 모두 자산탁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QFII에 대한 구체적인 중국내 영업세(Business Tax), 증권거래세(Stamp Duty) 및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 등 체세금의 과세규정, 세율, 적용시기 및 소급과세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불확실하며, 중국 관련 세법 및 규정 등이 향후 소급적용하여 변경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이익 또는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현수익자 또는 기존수익자가 과소 세금부담으로 환매대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과다 지급된 환매대금 등에 대해 현수익자 또는 기존수익자에게 환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익자로부터 과다 지급된 환매대금 등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해당 수익자의 잔존금액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수익자가 전액 환매한 이후인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수익자로부터 과다 지급된 환매대금 등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당액이 이 투자신탁재산(모투자신탁재산 포함)에서 차감되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과세당국이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세율을 인하여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그 결정 이전에 지급된 환매대금, 이익분배금, 상환금 등에 대해 해당 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 1) cai shui [2005] No.155 : the Noti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on the Business Tax Policies for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주 2) 財稅 [2008] 1 호 : Article 2.2 of the Circular on Certain Preferential Policies for the Enterprise Income Tax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한국 및 중국 등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m.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절차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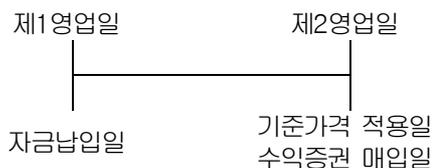
종류 구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 이내
종류 C	제한없음	없음
종류 C2	종류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없음
종류 C3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없음
종류 C4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없음
종류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종류 C-F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 2.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3.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없음
종류 C-I1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종류 C-I2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종류 C-W	1.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2.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없음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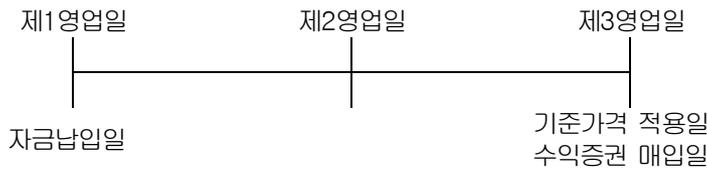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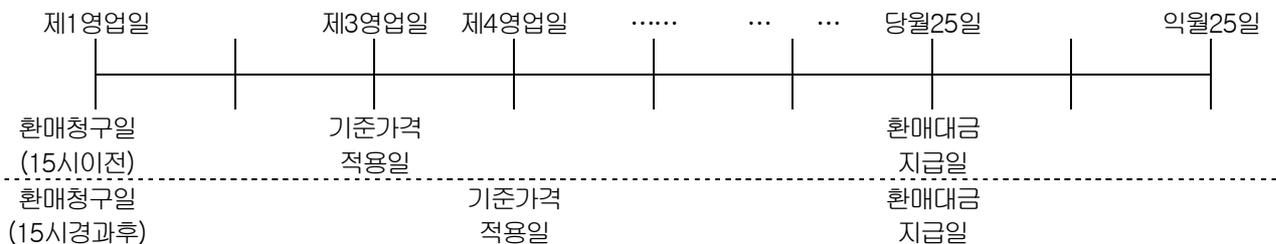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매월 14일 이전 환매 청구시

- ①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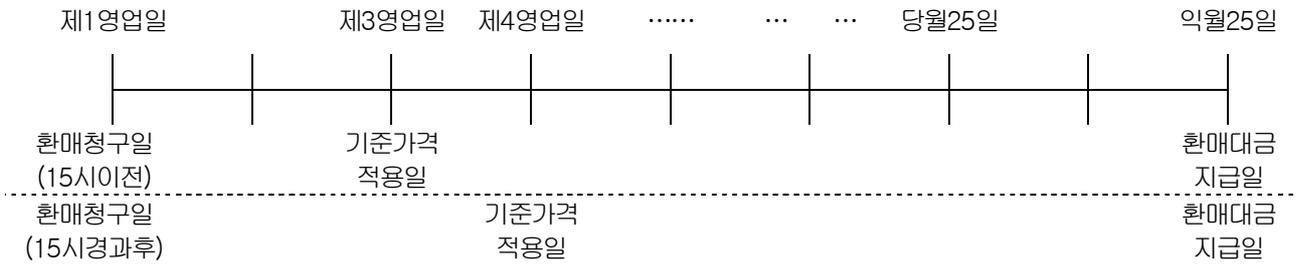
※ 다만, 환매대금 지급일이 중국의 공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매월 15일 이후 환매 청구시

- ①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



※ 다만, 환매대금 지급일이 중국의 공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공시

가.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외로의 송금이 제한되는 경우 :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 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수익자의 환매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되,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한 환매대금에 대해서는 1) 및 2)의 규정에 의한 차기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 지급. 다만, 차기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도 월간 송금한도액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금한도액을 충족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까지 순연하여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 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종류 C-I1	종류 C-I2	종류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90일이상 180일미 만: 이익금의 30%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

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신탁계약서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12.02.04)	(2011.02.04)	
운용자산	7,118,142,231	10,124,316,641	
증권	7,110,509,520	10,120,007,254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7,632,711	4,309,387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52,003,324	168,118,294	
자산총계	7,170,145,555	10,292,434,935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85,779,724	214,200,159	
부채총계	85,779,724	214,200,159	
원본	9,057,966,492	10,064,737,780	
수익조정금	-97,043,552	-638,435,313	

이익잉여금	-1,876,557,109	651,932,309	
자본총계	7,084,365,831	10,078,234,776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11.02.05 - 2012.02.04)	(2010.02.05 - 2011.02.04)	
운용수익	-1,720,354,422	769,184,887	
이자수익	9,492,406	5,454,351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차익(손)	-1,729,846,828	763,730,536	
기타수익	1,862,716	8,631,729	
운용비용	156,272,051	123,984,984	
관련회사 보수	156,272,051	123,984,984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1,793,352	1,899,323	
당기순이익	-1,876,557,109	651,932,309	
매매회전율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